Sunshine GWANGYANG
광 양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18호 2024. 5. 1.(수)

조 례

광양시 공고 제2024-1096호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광양시 공고 제2024-1098호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7
광양시 공고 제2024-1100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4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32호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29
광양시 규칙 제933호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34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4-1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사)한국예총광양지회 ····· 37
광양시 고시 제2024-12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3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4-1075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의 경관육교 가설로 인한 도로 전면 통제 ····· 40
광양시 공고 제2024-1087호 도로지정공고 -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82-6번지 ····· 41
광양시 공고 제2024-1111호 2024년 1/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 43

회람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공고 제2024-1096호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입법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2. **개정 이유**

❍ 우리 시 일상감사 대상사업(공사·용역·물품) 금액 기준 등 변경을 위해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금액 기준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현격히 낮아 형평성에 위배.

- 1억 이상 주요 공사의 계약방식 사전 검토 불가.

3. **주요 내용**

❍ **일상감사 방법 (안 제6조)**

❍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별표1])**

4. **일부 개정안**: 붙임2

5. **입법예고기간**: 2024. 5. 1. ~ 2024. 5. 21. (20일간)

6.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전화 061-797-2383 / 팩스 061-797-4186 / 전자우편 jkt7436@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30.>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읍·면·동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업무
4. 그 밖에 일상감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업무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사한 사항

2. 국가행정기관 또는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심의 또는 심사절차를 거친 업무 또는 사업

3. 전문기관의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친 사항

4. 의회의 사전 승인(동의) 절차를 거친 사항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⑤ 광양시장이 일상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감사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일상감사 결과 통보 요구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③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④ 감사실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5조(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6조(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따른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삭 제>

③ <삭 제>

④ 감사실장이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⑤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 · 전기 · 통신 ·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분야는 사전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신기술 ·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장은 일상감사 접수 · 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접수 · 처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8조(재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9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실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6. 30.>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구　　분	[　]주요정책 집행업무　　[　]계약 업무 [　]예산관리 업무　　[　]기타 업무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추진 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일반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 재원구성 : (재원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부담비 등) ○ 사 업 비(총공사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 주요 시행 계획
세부내역	※ 세부내역 별지 작성가능
주관부서 의　　견	
관련법규	
담당부서	입안자　　직급(위)　　성 명 심사자　　직급(위)　　성 명
비　　고	

첨부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사업계획 관계서류 등

년　　월　　일

신청자(집행부서의 장)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의견서번호		신청부서	
‘ 사업(업무) 명 ‘ 사업개요 ‘ 검토내용 ‘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년 월 일

감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주관부서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사업(업무)명					

‘ 업무요지

‘ 조치요구내용(감사의견)

‘ 조치한 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사업비 (당초) - - - 천원

(변경) - - - 천원 (증·감 - - 천원)

‘ 사유 및 관련 법규 등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일	접수 번호	의뢰 부서	사업(업무) 명 (사업내용)	회보현황		감사의견 조치여부
				일자	감사의견	

[별지 제5호 서식]

○○○위원회(등) 주요심사(심의) 내역

☐ 사업(업무)명 :

☐ 심사(심의)기관 :

☐ 주요 내용 :

☐ 조치 사항(미조치 사항 포함)

붙임 : 관련 증거서류

제출자(집행부서의 장) : 소속 직위(급) 성 명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제3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대 상 업 무 및 기 준</th></tr>
<tr><td>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td><td>· 시정 주요 시책(역점)사업
·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의 방침결정사항(3천만원이상)
※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였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 집행업무</td></tr>
<tr><td>계 약 업 무</td><td>·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table>
<tr><th>구 분</th><th>공 사</th><th>용 역</th><th>물품 제조·구매</th></tr>
<tr><td>추정금액</td><td>(종합) 5억원이상
(기타) 3억원이상</td><td>7천만원이상</td><td>5천만원이상</td></tr>
</table>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
· 국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자산의 매각 및 매입 계약
· 5천만원 이상의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단가계약 체결
·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증액되는 경우</td></tr>
<tr><td>예산관리업무</td><td>·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단,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함)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시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td></tr>
<tr><td>기 타</td><td>· 소속 직원의 주요 정부 포상에 관한 사항
· 소관(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재단 등에 대하여 1억원 이상 신규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실 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td></tr>
<tr><td>제 외 대 상</td><td>·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심사 제외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관리계획 제외대상</td></tr>
</table>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감사 방법)	제6조(감사 방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은 일상감사를 건설품질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품질 심사 전에 별도로 주요정책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2항에 따라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건설품질 심사로 갈음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건설품질심사 및 일상감사”로 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전기·통신·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 ---------- ---- 분야는 ---------- 부서에 ----------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분야는 사전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계약 업무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구 분 / 공 사 / 용 역 / 물품 제조・구매 추정 가격 /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1천만원이상 · 설계변경으로 최종 추정 가격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국・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2천만원이상 자산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 5천만원이상 시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5천만원이상의 단가계약 체결과 대상사업 중 금액이 10% 이상 초과한 변경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추진 계획	○ 재원구성 : (재원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부담비 등) ○ 사 업 비(총공사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 주요 시행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주관부서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사업(업무)명					
‘ 업무요지 ‘ 조치요구내용(감사의견) ‘ 조치한 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 사유 및 관련 법규 등					

개 정 안

[별표 1]

계약 업무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구 분 / 공 사 / 용 역 / 물품 제조・구매 추정 금액 / (종합) 5억원 이상 (기타) 3억원 이상 / 7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 · 국・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자산의 매각 및 매입 계약 · 5천만원 이상의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단가계약 체결 ·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를 초과하여 증액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진 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일반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 재원구성 : (재원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부담비 등) ○ 사 업 비(총공사비, 도급액, 관급액, 보상비) ○ 주요 시행 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주관부서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사업(업무)명					
○ 업무요지 ○ 조치요구내용(감사의견) ○ 조치한 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사업비 (당초) - - - 천원 (변경) - - - 천원 (증・감 - - - 천원) ○ 사유 및 관련 법규 등					

광양시 공고 제2024-1098호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1. **조례안명**: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서 위임한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현실에 맞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수관리 대상 물품 조항 신설(안 제21조)

○ 「별표 1」 광양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신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4. 29. ~ 2024. 5. 20.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회계과(우 57785)
- 전　　화: 061-797-2747
- 팩　　스: 061-797-2581(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haos3104@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양시 정수관리 대상 물품(제21조 관련)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	20101509	전기승용자동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7	25101591	수소승용자동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8	25101592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9	25101593	수소미니밴또는밴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0	25101594	수소버스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1	25101595	수소미니버스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2	25101596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3	25101597	전기미니밴또는밴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4	25101598	전기버스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5	25101599	전기미니버스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6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7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8	25101696	수소화물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1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0	25101703	구급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6	25101794	배연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7	25101795	조연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2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0	25101798	지휘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1	25101799	제독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2	25101910	살수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5	25101926	제설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3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7	25101930	조명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3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6	25101998	발전차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4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49	40101701	냉방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0	40101715	항온항습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1	40101787	냉난방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4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5	41111703	실체현미경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6	41111711	전자현미경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7	41115320	신호발생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8	41115406	분광광도계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5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단위 조직 수, 사무공간의 면적 및 위치 수
6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단위 조직 수
6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단위 조직 수
6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6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단위 조직 수, 업무량

붙임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광양시 공고 제2024-1100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환경보전기금은 우리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11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4. 29. ~ 2024. 5. 20.(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환경과 환경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환경과(우 57785)
- 전　　화 : 061-797-3330
- 팩　　스 : 061-797-2585
- 전자우편 : rosehip76@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2029년 6월 30일 -------.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32호

붙 임 :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4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과징금액의 50%	과징금액의 30%	감경제외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판매액이 100만원미만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판매액이 500만원이상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이상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4.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인원이 5인미만	출입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출입인원이 10인이상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유인인원이 5인미만	유인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1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한 때	판매액이 100만원미만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판매액이 500만원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정의) ---------- ----------.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 19세 ----------. --- 19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 처리한다.	제3조(감경대상) ----------. ----------. ----------.
1.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70세 이상 고령자	1. 19세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4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과징금액의 50%	과징금액의 30%	감경제외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판매액이 100만원미만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판매액이 500만원이상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이상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4.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인원이 5인미만	출입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출입인원이 10인이상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 한 경우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유인인원이 5인미만	유인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위 반 행 위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과징금액의 50%	과징금액의 30%	감경제외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한 때	판매액이 100만원미만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판매액이 500만원이상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이상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인원이 5인미만	출입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출입인원이 10인이상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유인인원이 5인미만	유인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개 정 안

[별표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4조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과징금액의 50%	과징금액의 30%	감경제외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판매액이 100만원미만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판매액이 500만원이상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이상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4.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인원이 5인미만	출입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출입인원이 10인이상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 한 경우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액이 10만원미만	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판매액이 30만원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유인인원이 5인미만	유인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유인인원이 1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제공인원이 5인미만	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제공인원이 10인이상
1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한 때	판매액이 100만원미만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판매액이 500만원이상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33호

붙 임 :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 --. 1. ---------- 19세 -------- --------. ----- 19세-------- ---------- ---. 2. (현행과 같음)

광양시 고시 제2024-1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
점용자	주소	광양 중마청룡길 8-4, 3층
	성명	(사)한국예총광양지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31외 1필지
	면적	66.11㎡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광양예술종합제
점용기간		2024. 4. 27.~2024. 4. 28.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4-12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길 99 외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5. 1.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7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산11-1, 산11-4, 산11-8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길 99	20240501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97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7길 32-1 (마동)	20240501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620-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촌길 125	2024050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41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3길 20	20240501	20100331	옛 광양읍성 남문거리의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170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선바위길 89-32	20240501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18-26	전라남도 광양시 느지매기1길 17 (마동)	20240501	20211027	옛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산73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황현로 338	20240501	20100525	매천황현선생의 성과 이름 사용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2024-1075호

[√] 통행의 금지·제한 / [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광 양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대로 2-1호선(백운로)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구간	중마 우림필유A 삼거리 ~ 와우초등학교 사거리 L=600m 구간 (대로 3-12 ~ 대로3-14)
기간	2024년 5월 4일(09:00)부터 2024년 5월 4일(16:00)까지		
이유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의 경관육교 가설로 인한 도로 전면 통제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광양시 공고 제2024-108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4. 4. 25.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82-6번지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82-6번지	18.3m	4m	10㎡	김O태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 061-797-2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V] none, [ ] 1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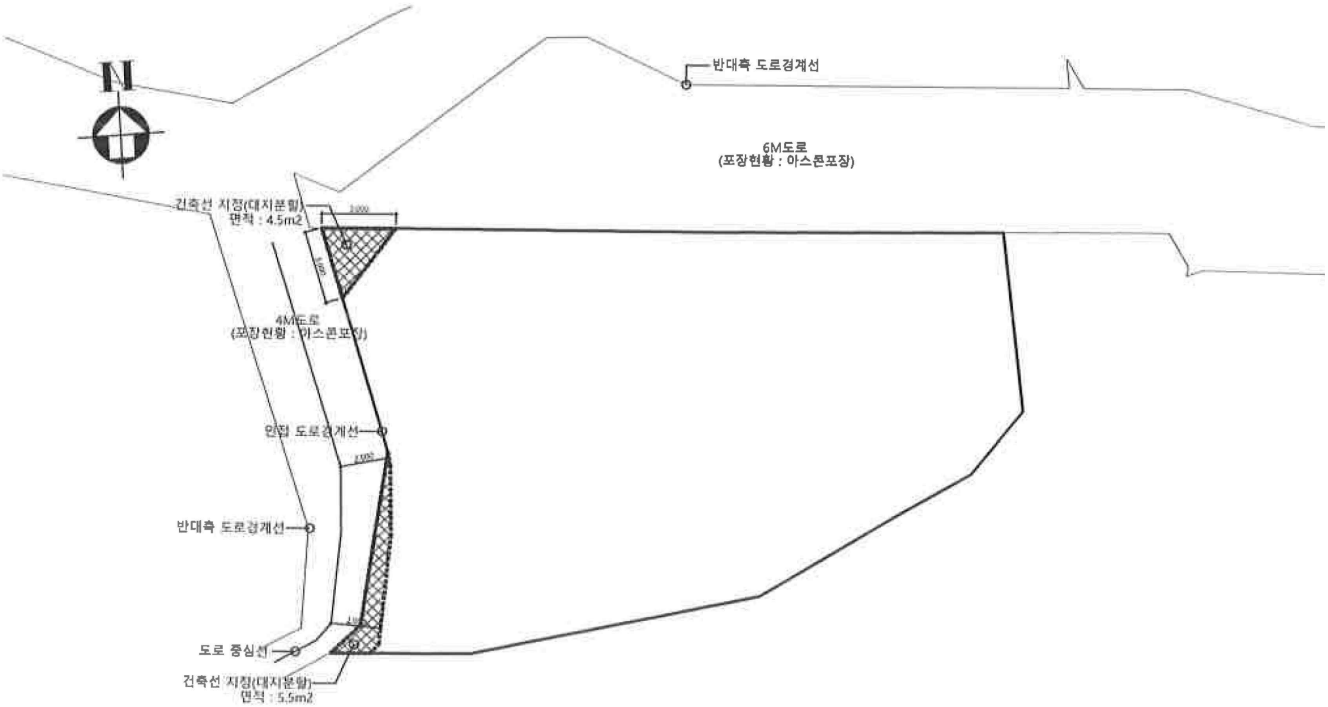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V] 1 / 300, [ ] 1 / 1,200,

광양시 공고 제2024-1111호

2024년 1/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2024년 1/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① 2.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12. 31.

② 3. 공고장소 : 우리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붙임 참조). 끝.

2024년 1/4 분기 임대조건 현황

임대주택 주소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312	20260311	3,000,000	336,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117	20260116	3,000,000	31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210	20260209	2,000,000	283,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10	20240320	20260319	5,000,000	42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1	20240520	20301113	163,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영수길 30-6	20240301	20250228	-	2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20240229	20260228	13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39	20240301	20260228	10,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	20240208	20260207	71,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41	20240229	20260228	6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15	20240514	5,000,000	32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25	20240307	20260307	3,000,000	2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103	20250102	3,000,000	35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104	20250103	3,000,000	34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25	20241224	3,000,000	312,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26	20251225	3,000,000	33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16	20240515	10,000,000	25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31230	20241229	1,000,000	3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40102	20250101	1,000,000	32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40102	20250101	1,000,000	3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31205	20241204	1,000,000	31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40127	20260126	1,000,000	31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31221	20251220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39	20231201	20240609	1,000,000	31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216	20250215	7,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31115	20241114	3,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67	20240312	20260311	1,000,000	3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67	20240301	20241231	1,000,000	12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67	20240210	20260209	1,000,000	1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41	20240301	20250228	2,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41	20240301	20250228	2,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2길 9-1	20240315	20280314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2길 9-1	20240128	20260127	3,000,000	2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39	20240114	20260113	14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31205	20251204	3,000,000	32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5	20240216	20250215	800,000	2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5	20240219	20250218	1,000,000	1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5	20240221	20250220	16,000,000	14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120	20260219	60,000,000	60,000

임대주택 주소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1	20240216	20270320	111,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1	20240318	20270720	111,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	20231121	20251121	10,000,000	35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	20231219	20251219	7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	20240105	20260105	71,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11	20241210	3,000,000	31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04	20240703	3,000,000	32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7	20240301	20250228	2,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7	20240301	20250228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7	20240126	20250125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7	20240128	20250127	2,000,000	39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7	20240120	20250119	2,000,000	39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5	20240205	20250204	2,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5	20240130	20250129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5	20240123	20250122	2,000,000	38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8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42	20231102	20240201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42	20231117	20241116	1,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42	20231117	20241116	1,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80	20240225	20260224	2,000,000	2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41	20240202	20250201	2,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80	20240219	20250218	2,000,000	2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216	20240715	5,000,000	472,5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8-2	20240123	20250122	2,000,000	380,000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	20240207	20250206	500,000	150,000

임대주택 주소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91	20240115	20260114	4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226	20250225	2,000,000	34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212	20250211	2,000,000	32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015	20241014	2,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31	20241230	1,000,000	35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13	20231231	20251230	800,000	31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13	20231231	20251230	8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13	20231222	20241221	5,000,000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13	20240103	20250102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39	20240201	20260131	10,000,000	45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25	20240205	20260205	1,000,000	2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10	20231223	20251222	5,000,000	47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114	20260113	5,000,000	525,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20240131	20250130	136,5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170	20240215	20260214	3,000,000	2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10	20240110	20260109	5,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210	20240130	20260129	3,000,000	36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201	20260131	5,000,000	379,000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170	20240120	20260119	2,000,000	220,000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170	20240127	20260126	2,000,000	189,000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80	20240110	20260109	3,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20231220	20251219	2,000,000	325,9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67	20240113	20260112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67	20240118	20250117	2,000,000	17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번지	20240228	20300111	143,5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1	20240109	2027032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1	20231220	20301229	22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12-20	20240201	20260131	5,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19	20241218	3,000,000	34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16	20241215	5,000,000	31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02	20241201	3,000,000	34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25	20241124	3,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5	20240122	20250121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9	20231101	20251031	80,6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7,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임대주택 주소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91	20240223	20280222	4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203	20250202	5,000,000	3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8-2	20231220	20240706	2,000,000	1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1길 8	20240204	20260203	10,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31023	20251022	5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65	20240113	20250112	3,000,000	467,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55-5	20231013	20251012	113,9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55-5	20210811	20230810	108,486,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65	20231125	20251124	15,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20231219	20251218	3,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20231221	20251220	3,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3길 22	20240110	20250109	5,000,000	45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3길 22	20240110	20250109	5,000,000	45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길 38-5	20240103	20250102	2,000,000	22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길 38-5	20231221	20241220	2,000,000	2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9	20231101	20251031	12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20231020	20251019	116,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41	20240110	20260110	5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옹기길 15	20230701	20280630	-	6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121	20260120	4,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01	20241031	4,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28	20241127	4,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22	20241121	5,000,000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9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8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9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3길 22	20231229	20241228	5,000,000	45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48	20231214	20241213	3,000,000	4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48	20231209	20241208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48	20231004	20241003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40103	20250102	2,000,000	32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10	20241209	2,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영수길 30-6	20231228	20241227	1,000,000	27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030	20241029	10,000,000	54,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20231117	20251116	3,000,000	33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201	20241130	4,000,000	400,000

임대주택 주소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114-19	20231227	20251227	120,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9	20231130	20251130	75,6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14	20241113	3,000,000	3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24	20241123	3,000,000	3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01	20241031	3,000,000	33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118	20241117	3,000,000	35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1	20231031	20241030	3,000,000	32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40103	20260102	79,000,000	8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231123	20241122	5,000,000	413,000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90	20231211	20251211	41,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8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8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8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중동 1322-1외9필지	20250701	20350630	285,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5,000,000	-

임대주택 주소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4,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5-1	20240731	20260730	219,000,000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5	20231221	20240620	1,000,000	3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12-20	20231229	20251229	5,000,000	360,000